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2. 25 선고 2018가단22300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창재

피 고 1. B

2. C

피고1,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박해동

3. D

변 론 종 결 2020. 11. 26.

판 결 선 고 2021. 2. 25.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부터,

나. 피고 D는 1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각 2021. 2.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1), 피고 D는 3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D와 골프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나. 피고 B은 2018. 3.경 원고, 피고 D와 사이에 각자 균분하여 투자하여 태국에서 주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E으로부터 E이 태국 파타야에서 운영하는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금이 2억 원이었음에도 원고와 피고 D에게 위 주점의 권리금이 3억 원이라고 기망하고 자신이 부담해야 할 투자금을 원고와 피고 D의 자금으로 조달하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태국 파타야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에서 원고, 피고 D에게 “파타야에서 E이 운영하는 술집이 있는데 권리금이 3억 원이다. 우리 3명이 각자 1억 5,000만 원씩 합계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함께 술집을 운영하자.”라고 거짓말하였고, 원고와 피고 D는 피고

B의 위 거짓말에 속아 각 1억 5,000만 원씩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D는 E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2018. 3. 14. 2,000만 원, 2018. 3. 20. 1억 3,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은 2018. 3. 20. 피고 C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26. 피고 C의 지인 G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 2018. 4. 2. 위 F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B, C을 사기죄로, 피고 D를 횡령죄로 각 고소하였고, 부산지방법 검찰청 동부지청은 2020. 2. 25.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310호로 기소하였고, 피고 C과 피고 D에 대하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하였다.

#### 공소사실

피고인(피고 B)은 태국에서 피해자 A(원고), 피해자 D(피고 D)와 주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균분하여 투자하기로 하였고, 당시 전 업주 E으로부터 업소를 인계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금은 2억 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주점의 권리금이 3억 원이라고 기망하고 자신이 부담해야 될 투자금을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조달하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에서 피해자 A, 피해자 D에게 “파타야에서 E이 운영하는 술집이 있는데 권리금이 3억 원이다. 우리 3명이 각자 1억 5,000만 원씩 합계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함께 술집을 운영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술집의 권리금은 3억 원이 아니고 2억 원임에도 E에게 부탁하여 위 권리금이 마치 3억 원인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여주었고 당시 피고인은 부산에서 불법체류자 외국인 등을 고용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할 만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가 E의 처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8. 3. 14. 2,000만 원, 2018. 3. 20. 1억 3,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자 2018. 3. 20. E로부터 7,000만 원을 되돌려 받고, 피해자 A로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피고 C의 오기임)의 지인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 B는 2020.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원고와 피고 D는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한 후 3,000만 원씩을 추가로 투자하였는데 위 주점을 매각 후 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하고, 2018. 7.경 이 사건 주점을 H에게 권리금 2억 원에 양도하였고, 위 2억 원과 임대차보증금 잔여금 6,000만 원 합계 2억 6,000만 원을 1/2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차. 피고 D는 2018. 7. 16. H로부터 받은 계약금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8. 8.경 잔금 2,000만 원은 원고가 수령하였다.

카. 피고 D는 2018. 7. 25. H로부터 잔금 1억 원을 송금받아 2018. 7. 29. 그 중 1,94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타. 피고 D는 태국에서 이 사건 주점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받는 것이 쉽지 않자 E에게 보증금 정리 문제를 위임하면서 보증금을 회수하면 전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부탁하였는데, E은 수수료, 공과금 등을 임의로 공제한 후 2018. 8.경 원고에게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편취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피고 D에게 2018. 3. 21. 1억 원, 2018. 4. 18. 3,800만 원 합계 1억 3,800만 원을 송금하여 원고와 피고 D로부터 편취하였다는 1억 2,000만 원을 상회하는 돈을 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투자하여, 원고와 피고 D로부터 투자받은 돈에서 실질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원고와 피고 D는 이 사건 주점을 처분하여 원고는 1억 원, 피고 D는 1억 3,000만 원을 나누어 가져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함으로써 원고에게 남아 있는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D에게 2018. 3. 21. 1억 원, 2018. 4. 18. 3,800만 원 합계 1억 3,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D로부터 편취한 1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주점에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피고 B이 투자하여야 할 금원을 지출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이 실질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처분하여 9,940만 원(= 계약금 중 3,000만 원 + 잔금 1억 원 중 1,940만 원 + 잔금 2,000만 원 +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회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돈은 위 편취금 5,000만 원 외에 원고가 투자한 1억 3,000만 원에 대한 정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인정사실 및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위 편취금을 배상받거나, 남아 있는 손해가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서 원고 및 피고 D와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0. 7. 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7.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D는 이 사건 주점의 정산금 2억 6,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9,94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06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거나, E에게 임대차보증금 수령을 임의로 위임하여 원고가 3,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3,0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3,060만 원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D는 원고와 사이에 정산금의 1/2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정산금으로 실제 회수한 2억 3,000만 원 중 9,94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560만 원(= 2억 3,000만 원 ÷ 2 - 9,94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정산금 중 3,06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D가 E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정리 문제를 위임하였고, 위 보증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거나, 피고 D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 D가 이 사건 주점의 정산금 중 1/2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D가 2018. 7. 16. H로부터 받은 계약금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8. 8.경 잔금 2,000만 원은 원고가 수령하였으며, 피고 D가 2018. 7. 25. H로부터 잔금 1억 원을 송금받아 2018. 7. 29. 그 중 1,94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위임받은 E이 수수료, 공과금 등을 임의로 공제한 후 2018. 8.경 원고에게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에게 1,560만 원(= 실제 회수한 정산금 2억 3,000만 원 ÷ 2 - 9,9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D가 정산금을 회수한 다음날인 2018. 7. 26.부터 피고 D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는 E에게 잔금을 원고가 수령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는데 원고가 E와 동행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러 갔음에도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 D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D가 E에게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위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데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윤경

1) 원고는 2020. 7. 1.자 소일부취하서로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 C이 이에 부동의하였다.